

퇴거 방지

설명된 모든 정보는 [NYC.gov/tenantprotection](https://nyc.gov/tenantprotection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정보는 [MOPT의 COVID-19 팩트 페이지](#)를 방문하시거나, 또는 311에 전화해서 “Tenant Helpline”을 통해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.

사실

- 세입자가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, 리스 계약을 한 경우, 집주인은 주택 법원의 허가 없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. 퇴거에는 시간이 걸리며 세입자는 절차상 권리가 있습니다.¹
- 세입자가 리스 계약을 했거나,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, 판사가 명령을 발부하여 집주인에게 허가를 준 경우에만 집주인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. 집주인, 관리자 또는 집주인의 대리인이 아파트를 잠그는 경우, 911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세요.
- 경찰이 도와줄 수 없는 경우, 세입자는 주택 법원에서 “불법 출입문 폐쇄(Illegal Lockout)”라는 긴급 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세입자는 “[점유권을 회복하고](#)” 아파트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.
 - 긴급 사건은 전자적으로 또는 전화로 시작할 수 있으며, 세입자는 법원에 오지 않고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.
 - COVID-19/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 동안 뉴욕시 주택 법원 운영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nycourts.gov를 방문하시거나, 또는 아래의 번호로 긴급 주택 법원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전화하세요.

Bronx 718-618-2500

Harlem 646-386-5409

Kings (Brooklyn) 347-404-9133

New York (Manhattan) 646-386-5730

Queens 718-262-7300

Richmond (Staten Island) 646-386-5409

본 안내서에 설명된 권리는 임시 또는 단기 주거지를 제공하는 비영리 또는 정부 프로그램의 참여자에게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

세입자 자원

- 퇴거에 처했거나 주택 상황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모든 임차인은 무료 법률 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311에 전화해서 “Tenant Helpline”을 요청하시거나, 또는 뉴욕시장실 산하 세입자 보호국(Mayor’s Office to Protect Tenants)의 [연락 양식](#)을 작성하세요.
- 세입자의 권리, 퇴거 유예 또는 COVID-19 동안 주택 법원 운영에 관한 업데이트된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[MOPT의 COVID-19 팩트 시트](#)를 방문하시거나, 또는 311에 전화해서 “Tenant Helpline”을 요청하세요.



법률 지원 이용

- 뉴욕시 임차인은 무료 법률 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311에 전화해서 “Tenant Helpline”을 요청하시거나, 또는 뉴욕시장실 산하 세입자 보호국(Mayor’s Office to Protect Tenants)의 [연락 양식](#)을 작성하세요.
- 퇴거에 처한 세입자는 인적 자원 관리국(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)의 분과인 시의 민사 법무국(Office of Civil Justice)을 통해 무료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할 수 있습니다. 무료 법률 지원 이용 방법에 관한 정보는 311에 전화해서 “Tenant Helpline”을 요청하시거나, 또는 nyc.gov/civiljustice를 방문하세요.

무료 법률 상담 이용 방법에 관한 정보는 311에 전화해서 시의 Tenant Helpline을 요청하세요.

임차료 및 유틸리티 지원

임차료 보조금이 있는 세입자가 자신의 임차료 분담금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:

- **NYCHA 공공 주택** - NYCHA 거주자가 [임차료 지불에 어려움](#)을 겪고 있다면 임차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직장에서 근무 시간이 줄었거나, 실직한 경우, 임시 재인증(Interim Recertification)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 해당 가구는 718-707-7771에 전화하여 옵션 5를 선택하세요.
- **NYCHA 섹션 8** - NYCHA는 소득 상실로 임차료를 지불할 수 없는 가구에 셸프서비스 포털을 방문하도록 권장합니다. 섹션 8 참가자는 [NYCHA 셸프서비스 포털](#)을 통해 임시 재인증을 완료함으로써 가구 소득 감소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 인터넷이 없는 가구는 요청서를 P.O. Box 19196, Long Island City, NY 11101-9196에 제출하시거나, 또는 NYCHA의 고객 연락 센터(718-707-7771)에 전화하여 지원을 받으세요.
- **HPD 섹션 8** - 소득 감소로 인해 임차료 고통에 처한 바우처 소지자는 [소득감소 보고 양식\(Reporting Income Decrease Form\)](#)을 작성해서 DTRIncomeDecrease@hpd.nyc.gov로 보내시거나, [문서 포털](#)에 업로드하세요.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가구는 팩스(번호: 212-863-5299)로 양식과 문서를 제출하시거나, 또는 우편으로 양식과 문서를 보내세요 (주소: HPD Division of Tenant Resources, 100 Gold Street Room 1-M, New York NY 10038). 현재 HPD의 고객 서비스 부서는 운영되지 않습니다.
- **CityFHEPS** - 소득을 상실한 CityFHEPS 프로그램 참가자는 [세입자 분담금 조정 요청](#)을 RAPRenewals.hra.nyc.gov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

임차료 지원 신청:

NYC 사회복지부/인적 자원 관리국(DSS/HRA)은 지원이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지속적인 월 임차료 보조금을 포함한 현금 지원, 또는 임차료나 유틸리티 연체에 대한 일회성 긴급 지원/원샷딜(EA/OSD)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신청하세요.

- **ACCESS NYC** - ACCESS NYC를 방문하여 임차료 지원이나 연체에 대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.
- 311에 전화해서 “Homebase”를 요청하여 Homebase 노숙 방지 프로그램에 연락하시거나, 또는 [Homebase 위치 찾기](#)를 이용하여 가까운 사무소에 전화하세요.
- Tenant Helpline의 지원을 받으려면 311에 전화해서 “Tenant Helpline”을 요청하시거나, 또는 뉴욕시장실 산하 세입자 보호국(Mayor’s Office to Protect Tenants)의 [연락 양식](#)을 작성하세요.

ACCESS NYC는 해당 가구의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한 공공 혜택 프로그램을 권고하는 도구입니다. ACCESS NYC는 신청 방법을 안내하지만 신청서의 적격 여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온라인으로 ACCESS NYC(nyc.gov/accesshra)를 방문하시거나, Access HRA 앱 (iOS 및 Android)을 사용하세요.

고지사항: 본 안내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본 안내서의 모든 정보, 내용 및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 목적입니다.

무료 법률 상담 이용 방법에 관한 정보는 311에 전화해서 시의 Tenant Helpline을 요청하세요.